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9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3. 3.

판 결 선 고 2017.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2.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5,701,72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380,93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616,5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 청구취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한 귀속연도란과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redacted]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1. 8. 25.경 [redacted]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가 [redacted]외 [redacted]필지 지상에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3.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을 신청하였고, 2011. 9. 27.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 19.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제작소'라 한다)와 위 건물 [redacted]층에 위치한 다목적강의실(원고는 이 곳을 '[redacted] TRAP'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의실'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redacted]제작소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redacted]제작소는 2012. 2. 10. 이 사건 강의실에 관하여 영화상영관 등록을 마쳤고, 이후 [redacted]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는 유료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6. 7. 10. 및 같은 달 12. 원고에게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가산세 포함) 25,701,82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380,93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포함) 1,616,540원을 부과 · 고지하였고,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9. 및 11.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강의실은 [redacted]대학교 미디어학부 실습수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강의실을 주로 실습수업을 위한 공간과 학교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가 [redacted]제작소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redacted]제작소로 하여금 이 사건 강의실에서 수업시간 이외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redacted]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들의 실습수업을 위해서는 영상제작기기, 디지털영상기 등의 전문 기기가 구비 및 관리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자체적으로 구비 및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redacted]제작소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제한적 허가를 해 준 것이다.

3) 원고가 [redacted]제작소로부터 매년 지급받기로 한 10,000,000원은 차임이 아닌 발전기금이므로, 원고가 [redacted]제작소에 이 사건 강의실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4) [redacted]제작소는 이 사건 강의실에서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였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데 독립예술영화 관람은 [redacted]대학교 미디어학부 수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5)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강의실을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수년간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었던 이상,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강의실이 과세대상임을 인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강의실에 관한 영화상영관등록증에는 이 사건 강의실의 착공일자가 2009. 11. 13., 준공일자가 2011. 8. 25.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2012. 1. 18. 제정한 「미디어관 다목적강의실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는 '이 사건 강의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반강의실에서 강의가 어려운 영상 강의와 미디어학부 자체 행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학기 중 평일 오후 2시 이후와 주말 및 방학 중에는 독립예술영화관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전문업체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위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3) 원고는 2012. 1. 19. 꿈길제작소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미디어관 다목적강의실([redacted]TRAP) 임대차계약서

제1조(임대차 물건)

[redacted]대학교는 [redacted]제작소에 이 사건 강의실을 임대하고 [redacted]제작소는 이를 임차한다.

제2조(임대차 사용 방법)

이 사건 강의실을 [redacted]대학교는 학기 중(개강일부터 기말고사 종료일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수업공간으로 사용하고, 그 외 학기 중 평일 오후 2시부터와 주말과 방학 중에는 전일을 영화관 및 부속공간으로 [redacted]제작소가 임차하여 운영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계약조건 및 기간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보증금 및 임대료)

① 위의 계약기간 중 [redacted]제작소가 점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하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임대료는 매년 10,000,000원(부가가치세, 전기 및 냉난방 등 사용료 포함)으로 하고, 회계정산보고 후 한달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1차 내지 3차년도(2014년)는 초기투자비를 감안 임대료 없다.

제5조(보증금 반환)

① 계약해지시 [redacted]대학교는 [redacted]제작소에 계약해지에 따른 제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redacted]제작소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redacted]제작소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이 사건 강의실 운영 기본원칙)

② [redacted]제작소는 이 사건 강의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고정비용 등 일체의 운영 경비를 우선 집행하며, 대관 및 시사회 유치, 공공 지원자금 확보 등 제반 수익모델을 [redacted]제작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의 책임과 명의로 기획, 시행하여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수익건전성을 확보한다.

③ 이 사건 강의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제반수입(입장수입, 공공지원자금, 후원기부금 등)의 사용은 아래의 지출 우선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영화관 운영비(인건비 포함)

2) 프로그램 및 기획전 사업비

3) 미디어학부 발전기금과 위탁업체 수익배분(50:50)

⑥ [redacted]제작소는 [redacted]대학교의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redacted]제작소의 운영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망실에 대하여는 꿈길제작소가 책임진다.

제9조(사전협의 및 승인)

① [redacted]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행사, 이벤트, 상영회가 이 사건 강의실에서 열릴 때에는 관련규정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전산망 상영등록과 예매 등에 차질이 없도록 1개월 전까지 [redacted]제작소와 협의하여 영화상영 시간표를 조정한다. 단, 그 기간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시설의 명도 및 원상복구)

① [redacted]제작소가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는 [redacted]제작소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임대차물건은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단, [redacted]대학교는 [redacted]제작소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하에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꿈길제작소가 임대차물건을 [redacted]대학교에 명도하지 못할 경우 [redacted]대학교는 [redacted]제작소의 소유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할 수 있다.

4) 원고는 2015 10. 23. [redacted]제작소와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2항을 '별도의 임대료는 없고 미디어학부 발전기금으로 매년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계정산보고 후 [redacted]대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한 달 이내에 납부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제7조 제3항[이 사건 강의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제반수입은 아래의 지출 우선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영화관 운영비(인건비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② 프로그램 및 기회적 사업비, ③ 미디어학부 발전기금과 위탁업체 수익배분(50:50)]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5) 이 사건 강의실에서 영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1]은 2012년 86,405,340원, 2013년 51,951,250원, 2014년 78,161,150원, 2015년 62,924,800원, 2016년 74,643,520원이었다. 2015년 기준 이 사건 강의실에서 상영된 영화는 약 58편이었고, 그 상영횟수는 약 1481회에 이른다.

6) 이 사건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2013년 30회, 2014년 59회, 2015년 58회, 2016년 51회이고, 학교행사는 2012년 5회, 2013년 27회, 2014년 45회, 2015년 18회, 2016년 25회이다.

7) 피고는 별지 상영시간표에 첨부된 각 상영시간표와 같이 이 사건 강의실에서 학기 중에도 09:00부터 14:00사이에 영화를 상영하였다.

8) [redacted]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사건 강의실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강의실에서 상영한 영화의 관람객 중 [redacted]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3.7%, 2013년 34.08%, 2014년 39.99%, 2015년 37.34%이다. 한편, 2016년 기준 [redacted]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의 관람료는 평일 6,000원, 주말 7,000원이었고, 일반 성인들의 관람료는 평일 8,000원, 주말 9,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꿈길제작소는 '매표액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 + 시사회 등 상영행사 대관료 - 배급사 부금'을 매출로 인식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1)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 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강의실을 원고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거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12. 1. 18. 제정한 「미디어관 다목적강의실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 제2항에는 '학기 중 평일 오후 2시 이후와 주말 및 방학 중에는 독립예술영화관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독립예술영화 관람이 [redacted]대학교 미디어학부 수업의 연장선이므로 독립예술영화관 운영 자체가 교육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독립예술영화 관람이 미디어학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로 영화를 상영하고(영화 관람객의 과반수 이상이 고려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아닌 일반인이었다), 영화 시사회를 위해 대관하는 등으로 매출을 올린 이상 그와 같은 독립예술영화관 운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호,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교육사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redacted]제작소로부터 매년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임을 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초기 3년간의 차임을 면제해 준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redacted]제작소가 영화상영에 필요한 설비를 자비로 설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의실에서 영화관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이 발생할 시 그 중 50%를 배분받기로 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3항).

다) 원고는 [redacted]제작소로부터 매년 지급받기로 한 10,000,000원은 차임이 아닌 발전기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의 표제가 '임대차계약서'인 점, 꿈길제작소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강의실을 사용 · 수익하는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redacted]제작소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방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을 약정한 점, 독립예술영화관 운영 이외에는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던 [redacted] 제작소가 독립예술영화관 운영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기부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edacted]제작소가 원고에게 매년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은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차임으로 보인다.

라) [redacted]제작소는 원고에게 약정과 다르게 2015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년분 차임도 5,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redacted]제작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강의실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며 매년 순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redacted]제작소가 매년 순손실을 입는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2015년분과 2016년분 차임을 감면 내지 유예해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redacted]제작소가 이 사건 강의실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단 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강의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2015년 기준 이 사건 강의실에서 상영된 영화는 약 58편이었고, 그 상영횟수는 약 1481회에 이르는 반면, 수업은 불과 58회, 학교행사는 불과 18회만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이 사건 강의실에서 학기 중임에도 09:00부터 14:00까지 유료로 영화가 상영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의실의 주된 사용용도는 영화상영으로 보이고, 수업과 학교행사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강의실이 [redacted]대학교 미디어학부 실습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redacted]대학교 미디어학부 교과과정 어디에도 대형스크린과 대형스피커 등의 영화 상영 설비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업이 있다고는 보이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않는바(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강의실에서 2012년에는 미디어학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일반적인 영상시설이 구비된 강의실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방송영화비평 수업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강의실에 구비된 영화 상영 설비는 미디어학부 실습수업이 아닌 영화 상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1. 9. 27. 원고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며 원고가 향후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고지하였던 점, ② 원고가 2012. 1. 18. 제정한 「미디어관 다목적강의실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 제2항 자체에 이 사건 강의실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독립예술영화관을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바,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해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 이행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임재남

판사 이슬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별지

청구취지 목록

처분일	귀속연도	세목 및 세액
2016. 7. 10.	2016. 7.	재산세 555,240원 도시지역분 310,930원 지역자원시설세 530,910원 지방교육세 111,040원
2016. 7. 12.	2016. 7. 과소분 추가고지	지역자원시설세 265,460원
	2015. 7.	재산세 559,140원 도시지역분 313,120원 지역자원시설세 802,020원 지방교육세 111,820원
	2014. 7.	재산세 562,400원 도시지역분 314,940원 지역자원시설세 763,590원 지방교육세 112,480원
	2013. 7.	재산세 532,460원 도시지역분 298,170원 지역자원시설세 509,060원 지방교육세 106,49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2012. 7.	재산세 534,410원 도시지역분 299,270원 지역자원시설세 510,980원 지방교육세 106,880원
	2015. 9.	재산세 165,870원 도시지역분 116,120원 지방교육세 33,170원
	2014. 9.	재산세 157,830원 도시지역분 110,480원 지방교육세 31,570원
	2013. 9.	재산세 148,540원 도시지역분 103,980원 지방교육세 29,710원
	2012. 9.	재산세 144,210원 도시지역분 100,950원 지방교육세 28,840원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별지

상영시간표

[2012. 10. 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상영시간표]



[redacted]시네마트랩 상영시간표

10월01일(월)~10월7일(일)

10/1(월)	10/2(화)	10/3(수)	10/4(목)	10/5(금)	10/6(토)	10/7(일)
11:00 웰 플레이	11:00 피에타	11:00 그 사람,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11:00 이탈리아 원단맨도		11:00 스시장인	11:00 피에타
13:10 스시장인	13:00 청오도시전: 17년 전의 약속	13:00 지상의 멜처럼	13:00 그 사람,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14:00 피에타	12:40 웰 플레이	13:00 두 개의 문
14:50 지상의 멜처럼	15:00 투올드탕탕커드	16:00 이탈리아 원단맨도	15:00 지상의 멜처럼	16:00 두 개의 문	14:50 이탈리아 원단맨도	15:00 피에타
17:50 피에타	18:50 두 개의 문	18:00 웰 플레이	18:00 스시장인	18:00 투올드탕탕커드	16:50 그 사람,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17:00 청오도시전: 17년 전의 약속
19:50 이탈리아 원단맨도	15:50 피에타	20:10 스시장인	19:40 웰 플레이	15:50 청오도시전: 17년 전의 약속	18:50 지상의 멜처럼	19:00 투올드탕탕커드

문의 전화 02-924-6579 트위터 @kucinematrap
카페 http://cafe.naver.com/kucinematrap

주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4층 KU시네마트랩

현재 상영작: 스시장인 지로의꿈, 이탈리아 원단맨도, 자전거, 투 올드 탕탕 커드, 웰 플레이 오버는 건방을, 청오도시전: 17년 전의 약속, 지상의 멜처럼, 그 사람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두 개의 문

상영 예정작: (10/11) 멜로 (10/12) 하나만 (10/18) 이스케이프 프로젝션

[2013. 5. 16.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상영시간표]



[redacted]시네마트랩 상영시간표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1회	11:30 웰 플레이	11:30 [illegible]	[illegible]	11:30 라운드 업	11:30 환상속의 그대	11:30 라자로 선생님	[illegible]
2회	13:50 [illegible]	13:50 라자로 선생님	[illegible]	13:50 [illegible]	13:40 지슬	13:20 웰 플레이	고대행자 KU그린영화제
3회	16:00 [illegible]	15:40 로마위드러브	15:50 [illegible]	16:20 웰 플레이	15:40 환상속의 그대	15:20 [illegible]	<마약공적논쟁> 에스코바
4회	18:00 라운드 업	17:50 [illegible]	17:50 웰 플레이	18:20 라자로 선생님	17:50 지슬	17:50 더 헌트	17:30 로마위드러브
5회	20:20 로마위드러브	20:20 웰 플레이	19:50 [illegible]	20:10 로마위드러브	19:50 환상속의 그대	[illegible]	19:40 환상속의 그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2014. 10. 27.부터 같은 해 11. 2.까지의 상영시간표]



[redacted]시네마트랩 상영시간표

10월27일(월) ~ 11월2일(일)

- 상영은 광고 없이 정시에 시작합니다.
- 상영 시작 10분 후에는 발권 및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 상영관 내 음수 및 음식물 반입이 안됩니다.

	10/27 (월)	10/28 (화)	10/29 (수)	10/30 (목)	10/31 (금)	11/1 (토)	11/2 (일)
1회	11:00 다이빙벨	10:30 프랭크	11:00 집 우어 발원	10:30 다이빙벨	10:30 모모세, 여기를 봐	내부행사 상영일정	10:30 모모세, 여기를 봐
2회	13:00 제보자	12:20 다이빙벨	13:00 비긴 어게인	12:00 자유의 연덕	12:30 프랭크		12:30 소일과 여름
3회		13:50 집 우어 발원		13:20 5일째 마중	14:20 66번째의 프라이	14:30 보이후드	14:30 집 우어 발원
4회	17:10 다이빙벨	15:50 보이후드		15:20 모모세, 여기를 봐	16:20 다이빙벨	17:30 5일의 마중	16:30 보이후드
5회	19:40 자유의 연덕	18:50 자유의 연덕	18:00 5일의 마중	17:20 소일날의 프라이	17:30 비긴 어게인	19:30 다이빙벨	19:30 프랭크
6회	20:00 다이빙벨	20:10 [redacted] 마법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20:00 프랭크	19:20 보이후드	19:50 집 우어 발원	21:00 집 우어 발원	

[2015.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상영시간표]



[redacted]시네마트랩 상영시간표

5월25일(월) ~ 5월31일(일)

- 상영은 광고 없이 정시에 시작합니다.
- 상영 시작 10분 후에는 발권 및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 상영관 내 음수 및 음식물 반입이 안됩니다.

	5/25 (월)	5/26 (화)	5/27 (수)	5/28 (목)	5/29 (금)	5/30 (토)	5/31 (일)
1회	11:30 [redacted] 색션3 기록은 나의 힘	11:00 원더슬립	상영없음	11:00 입맞 수 없는 비밀	10:30 위플래쉬	10:30 어린이	10:30 비바와 마이어를 찾아서
2회	13:30 [redacted] 색션5 우리, 사랑하다	14:30 비드맨		13:00 실루	12:30 비드맨	12:30 실루	12:10 원더슬립
3회	15:30 [redacted] 색션1 삶을 공부다	16:40 위플래쉬		14:30 위플래쉬	14:30 비바와 마이어를 찾아서	14:00 하나와 앨리스: 살인사건	15:40 입맞 수 없는 비밀
4회	17:30 [redacted] 색션6 또 다른 자신	18:30 비바와 마이어를 찾아서	16:00 반짝이는 작수소리	16:30 원더슬립	16:20 어린이	15:50 입맞 수 없는 비밀	17:40 하나와 앨리스: 살인사건
5회	19:30 [redacted] 색션2 경계 위에서 춤추다	20:20 입맞 수 없는 비밀	17:40 반짝이는 작수소리	20:00 하나와 앨리스: 살인사건	18:30 하나와 앨리스: 살인사건	17:50 비드맨	19:30 위플래쉬
6회			19:20 반짝이는 작수소리		20:10 입맞 수 없는 비밀	20:00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4

[2016. 9. 29.부터 같은 해 10. 5.까지의 상영시간표]



[redacted]시네마트랩 상영시간표

9월 29일(목) ~ 10월 5일(수)

- 상영은 광고 없이 정시에 시작합니다.
- 상영 시작 10분 후에는 입장 및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 상영관 내 촬영 외 촬영을 반입이 안됩니다.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10/4(화)	10/5(수)
1회	10:00 인민정물의 신부	10:00 비포 선셋	11:00 더 울프팩	11:00 비포 선셋	11:00 죽은 시인의 사회	11:00 서울역 (English Subtitle)	
2회	12:10 다음 산타아고	11:40 더 울프팩 (조조)	13:50 다음 침공은 어디?	12:40 아수라 (English Subtitle)	13:20 더 울프팩	12:50 물숨	상영없음
3회	14:00 다음 침공은 어디?	13:30 아수라 (English Subtitle)	15:10 아수라 (English Subtitle)	15:10 다음 침공은 어디?	15:10 아수라 (English Subtitle)	14:20 보통 좋은 이웃사이로	
4회	16:20 더 울프팩	16:00 다음 침공은 어디?	17:40 인민정물의 신부	17:40 아수라 (English Subtitle)	17:40 인민정물의 신부	16:00 물숨	15:40 물숨
5회	18:10 인민정물의 신부	18:20 인민정물의 신부	19:50 아수라 (English Subtitle)	20:00 인민정물의 신부	19:50 아수라 (English Subtitle)	17:30 부산행 (English Subtitle)	17:10 인민정물의 신부
6회	20:20 다음 침공은 어디?	20:30 아수라 (English Subtitle)				19:40 아수라 (English Subtitle)	19:30 아수라 (English Subtitle)

끝.